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0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1월 2일

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부분개정과 2007년도 공유 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
-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공유재산 소유·관리 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(안 제40조)
 - 공유지상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 방지
 - 1,000~2,000㎡이하 토지로서 1981. 4.30이전 건축된 건물이

위치한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(이 경우 2배가 동지역에서는 500m², 읍면지역에서는 1,000m²에 미달할 경우 각각 500m², 1,000m²까지) 매각이 가능했으나 그 건물이 단독주택의 경우 200m² 이내로 매각면적 한도 축소

- 은닉재산에 대한 총보상금 한도를 3,000만원으로 증액,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및 공유재산 소유·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(안 제64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,000만에서 3,000만원으로 3배 증액('06.12.30 개정)
 - 필지별 보상한도를 100~200만원에서 300~600만원으로 상향 (재산가액의 5~10% 기준)
- 기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, 제38조, 제42조, 제84조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 등
- 경상북도 회계과-9167 ('07.8.20) 호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40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익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면적이 1,000~2,000m²이하로서 '81.4.30 이전 건축된 건물이 위치한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 했으나 그 건물이 단독주택의 경우 200m² 이내로 매각면적 한도를 축소하였으며
-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필지별 「100~200만원」 한도를 「300~600만원」 한도로 인상하고 총보상금 한도를 「1,000만원」 에서 「3,000만원」 으로 상향 조정 하였음
- 기타 개정내용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조문일부를 삭제 및 변경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